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도심항공교통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11. ~ 9.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3. 지적재조사 정책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5. 지적재조사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7.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은평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으로 한정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수원국토	경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

	관리사무소	용인시	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은 제외한다)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여주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횡성군, 양구군, 철원군, 홍천군(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는 제외한다), 인제군(북면 한계리·용대리는 제외한다)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근덕면, 원덕읍으로 한정한다), 강릉시(옥계면 남양리는 제외한다),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방림면은 제외한다), 홍천군(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로 한정한다), 인제군(북면 한계리·용대리로 한정한다)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근덕면, 원덕읍은 제외한다), 강릉시(옥계면 남양리로 한정한다),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방림면으로 한정한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로 한정한다),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충주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청천면, 청안면은 제외한다), 음성군, 진천군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청천면, 청안면으로 한정한다),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상주시(화북면으로 한정한다),
	예산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제외한다),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무안군, 화순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강진읍 동성리, 움천면, 작천면, 병영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은 제외한다)
	남원국토 관리사무소	전북특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진안읍 군하리·정곡리·연장리, 부

		남원시	귀면은 제외한다)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강진군(강진읍 동성리, 움천면, 작천면, 병영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으로 한정한다)
	전주국토 관리사무소	전북특별 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진안군(진안읍 군하리·정곡리·연장리, 부귀면으로 한정한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진주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으로 한정한다),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경상북도 고령군(쌍림면 송림리·산당리·백산리·합가리·매촌리·하거리로 한정한다)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하양읍, 와촌면으로 한정한다), 영덕군, 울진군[금강송면 일부(광회리 광비2터널 울진방향 출구를 기준으로 구분)를 제외한다], 청송군(진보면 부곡리·후평리·추현리·합강리는 제외한다)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외서면, 사벌면으로 한정한다),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단촌면, 의성읍 철파리·업리·원당리 일부(원당고가교 종점을 기준으로 구분)로 한정한다], 울진군[금강송면 일부(광회리 광비2터널 울진방향 출구를 기준으로 구분)로 한정한다], 청송군(진보면 부곡리·후평리·추현리·합강리로 한정한다), 영양군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은 제외한다), 창녕군, 함안군 경상북도 청도군(청도읍 유흥리·고수리·초현리·원리·월곡리·신도리, 화양읍 범곡리·동상리·동천리·합천리·서상리·신봉리, 풍각면, 각남면으로 한정한다)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외서면, 사벌면은 제외한다), 경산시(하양읍, 와촌면은 제외한다), 칠곡군, 성주군,

		의성군[단촌면, 의성읍 철파리·업리, 원당리 일부(원당고가교 종점을 기준으로 구분)를 제외한다], 고령군(쌍림면 송림리·산당리·백산리·합加里·매촌리·하거리는 제외한다), 청도군(청도읍 유호리·고수리·초현리·원리·월곡리·신도리, 화양읍 범곡리·동상리·동천리·합천리·서상리·신봉리, 풍각면, 각남면은 제외한다)
--	--	---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	-----------------	----------

별표 9 중 공업서기 “3”을 “4”로, 기계운영서기 “22”를 “21”로 한다.

별표 9의2 중 공업서기 “3”을 “4”로, 기계운영서기 “22”를 “21”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토도시실) ① ~ ㉓ (생략)	제7조(국토도시실) ① ~ ㉓ (현행과 같음)
㉔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 21. (생략)	2.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지적재조사 정책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4.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5. 지적재조사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신 설>	27.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㉕ · ㉖ (생략)	㉕ · ㉖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공업서기	.		.	.	+1
	.		.	.	
			<u>3</u>	<u>4</u>	
기계운영서기	.		.	.	-1
	.		.	.	
			<u>22</u>	<u>21</u>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공업서기	.		.	.	+1
	.		.	.	
			<u>3</u>	<u>4</u>	
기계운영서기	.		.	.	-1
	.		.	.	
			<u>22</u>	<u>21</u>	
	.		.	.	
	.		.	.	